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)





기획재정부(공공정책총괄과) 044-215-5515, 5529 기획재정부(재무경영과) 044-215-5632 기획재정부(인재경영과) 044-215-5576 기획재정부(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) 044-215-5531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총수입액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2호, 제5조제3항, 같은 조 제 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"총수입액"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 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
제3조(정부지원액)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"정부지원액"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을 말한다.

- 1. 출연금,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「부담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 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
- 2.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, 이 경우 수입액은 수 수료·입장료·사용료·보험료·기여금·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.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

제4조(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)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"사실상 지배력을 확보"하고 있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(分散度)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
- 2.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(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) 에 관여하는 경우
- 3.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

제5조(자체수입액)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"자체수입액"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,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
- 1.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: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 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2. 기타사업 수입액 :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 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사업외 수입액 :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

제6조(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) ①법 제4조제1항제2호, 제5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총수입액,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,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의 자 체수입액(이하 "총수입액등"이라 한다)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, 3개년 평균으 로 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
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등을 산정할 때에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 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,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
③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. 다만,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등을 산정한다. <개정 2020, 11, 24,>

-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, 이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직원 정원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 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 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0. 3. 26., 2020, 11. 24., 2022, 8. 2.>
- ⑤ 법 제5조제1항제1호,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,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,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,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 정한다. 다만,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 가 작성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. <개정 2010. 3. 26., 2020. 11. 24.>
- ⑥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. 다만, 법 제 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. <개정 2010. 3. 26., 2022. 8. 2.>
-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・준정부기 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(이하 "주무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20. 11. 24.>
- 제7조(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•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. <개정 2022, 12, 20.>
 - 1. 직원 정원: 300명 이상
 - 2. 수입액(총수입액을 말한다): 200억원 이상
 - 3. 자산규모: 30억원 이상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(「국가재정 법」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)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 업으로 지정한다. <개정 2021, 12, 21.>
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.
 - 1. 자산규모: 2조원
 - 2.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: 100분의 85

[전문개정 2020, 11, 24.]

- 제7조의2(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가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 병원
 - 나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 학교치과병원
 - 다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- 라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 - 2. 기관 운영의 독립성,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.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
 - 나. 법무・준사법 업무, 합의・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
 - 다.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
 - 라.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
 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 - 3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"운영 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・인 문사회연구회

법제처

-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
- 3.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[전문개정 2020. 11. 24.]
- 제8조(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)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 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 -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.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 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0. 3. 26.>
- 제9조(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)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 - 1.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
 - 2.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·재화
 - 3.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
 - 4. 향후 5년간의 조직 · 인력 운영계획
 - 5.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
 - 6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
- 제10조(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) 법 제8조제17호에서 "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 8. 9., 2018. 9. 28., 2020. 11. 24.>
 - 1. 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
 - 2.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 - 3.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
 - 4.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
 - 5.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
 - 6.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·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7. 제29조의7제4항에 따른 인사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
 - 8.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
- 제11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·차장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- 1.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
 - 2. 행정안전부차관
 - 3.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
 - 4. 인사혁신처장
 -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"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"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8. 7. 29.>
 - 1.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- 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- 3.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
 - 4.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- 5.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
 - 6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 -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·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운영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 3. 26.>
 -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,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등의 출석, 자료 제출과 의 격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 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상정안건, 발언요지 및 결정사 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고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-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- 제13조(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· 의결에서 제척되다.
 - 1.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 - 2. 위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
 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·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 -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제14조(소위원회)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-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5조(경영공시)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<개 정 2010. 3. 26., 2016. 9. 22., 2018. 9. 28.>
 - 1.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·비치
 - 2.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
 - 3.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 • 비치
- 제16조(통합공시)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. 기준 및 절차 등(이하 "통합공시기준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 -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•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 -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 정보를 공시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- 제17조(고객헌장 등)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,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 - 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현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18조(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)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·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 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 -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21. 1. 5.>
 - 1.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・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
 - 2.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
 - 3.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
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혐의 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"한국자산관리공사"라 한다)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7. 14., 2014. 3. 24., 2018. 9. 28., 2022. 2. 17.>
- ④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14.>
- 1. 위탁의 목적
- 2. 위탁 수수료 및 비용
- 3.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
- 제19조(선임비상임이사)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(先任非常任理事)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.
 - ③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)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0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) ① 공기업・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
 -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임원 구성상의 양성평등 현황(성별 인원수 및 비율을 포함한다)
 - 2.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
 - 3.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
 - 4.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·이행과 보고서 작성·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6. 18.]

- 제21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"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"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 을 말한다. <개정 2022. 8. 2.>
 - 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22. 8. 2.>
 - 1.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: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2명의 근로자를 추천
 - 2.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: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근 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를 선출
- 제22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①법 제24조제3항 본문, 법 제26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10. 3. 26., 2016. 3. 31., 2022. 8. 2.>
 - 1.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: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
 - 2.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: 자산규모(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)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

②법 제24조제3항 본문, 법 제26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"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0. 3. 26., 2016. 3. 31., 2022. 8. 2.>

- 1. 「독립기념관법」에 따른 독립기념관
- 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- 3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
- 4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
- 5.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
- 6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장학재단
- 7.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
-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22, 8, 2,>
- 제23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(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)에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해야 한다. <개정 2020, 11, 24.>
 - ②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(複數)로 추천해야 한다. 다만,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 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1. 24.>
 - ③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 다만,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26., 2020. 11. 24.>
 - ④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·경제계·언론계·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 -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 - ⑥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20, 11, 24.>
 - ⑦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- 제23조의2(감사후보자 추천 기준)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"이란 공 공기관, 연구기관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 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-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 -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 - 1.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
 - 2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「정당법」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·수사·법무, 예산·회계, 조사·기획·평가 등의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

[본조신설 2020. 11. 24.]

- 제24조(임원후보자의 모집)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,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26., 2017. 8. 9.>
 - ②공기업·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·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- 제24조의2(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)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

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0. 3. 26.]

- 제25조(임직원의 검직제한)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|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5조의2(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)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.
 - 1.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 · 준정부기관
 - 2.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・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・사유・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 · 준정부기관
 -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.
 - 1. 작성 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
 - 2. 각종 전망・평가・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정(假定) 등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
 - 3. 작성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
 - 4. 법 제3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부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에 관한 사항
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 10. 2.]

- 제25조의3(예비타당성조사)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(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"기관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 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24., 2022. 12. 20.>
 - 1. 총사업비가 2.000억원 이상일 것
 - 2.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,000억원 이상일 것
 -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, 개요,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기관장은 법 제40조제3항 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(이하 "재난"이라 한다)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으 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1. 24.>
 -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을 거쳐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·조사수행기관·조사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, 9, 22.]

업제처

- 제25조의4(타당성재조사) ① 기관장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(이하 "타당성재조사"라 한다)해야 한다.
 - 1.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타 당성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예비타당성조사"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규모(이하 이 호에서 "예비타당성조사 대 상 규모"라 한다)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
 - 2.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인 사업

- 3.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의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
- 4.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
- 5.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
- 6.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
-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 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
- 2. 긴급한 경제·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
- 3. 재난예방·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

[본조신설 2020. 11. 24.]

제26조(결산서 제출) ① 삭제 <2011. 10. 14.>

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- 제26조의2(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(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④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 3. 26.]

- 제27조(경영실적 평가)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 -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 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 정된 공기업 •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7. 14.>
 - ③ 법 제48조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, 「상법」, 「형법」, 「조세범 처벌법」, 「지방 세기본법_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,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, 조세포탈,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8, 9, 28,>
 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 의 및 요구,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7. 14., 2018. 9. 28.>
- 제28조(공기업·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)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·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(이하 "경영평가단"이라 한다)을 수시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7. 14.>
 - 1.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
 - 2.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3.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·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
 - 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
 -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.
 -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・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

재정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26.>

- 제29조(감독의 적정성 점검)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 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·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 <개 정 2008. 2. 29.>
- 제29조의2(출연・출자에 대한 사전협의)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 · 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
 - 가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
 - 나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
 - 다.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 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의결
 - 라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28조의3 또는 「신용보증기금법」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 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
 - 마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28조의4 또는 「신용보증기금법」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
 - 바. 「예금자보호법」 제38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
 - 사. 「공적자금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
 - 2.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 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
 - ② 출연·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·출자에 대하여 공기업·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 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 - ③ 공기업·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·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·출자하기 위하 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 - 1. 출연・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
 - 2. 출연·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
 - 3. 출연·출자의 금액 및 시기
 - 4. 출연·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
 - 5.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·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, 채무보증, 손실보전 등의 내용
 - 6.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

[본조신설 2016, 9, 22.]

- 제29조의3(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)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"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1.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
 - 2. 해당 공공기관의 공금,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, 배임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
 - 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
 - 5. 법령이나 정관·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·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 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
 - 6. 그 밖에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
 -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.
 - 1.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: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
 - 2.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감사원에 감사 의뢰
 - 3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: 기획재정 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, 주무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 의뢰.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뢰하는 감사는 법 제52조의6에 따른 인사감사로 한정한다.
 -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 28.]

- 제29조의4(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)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, 6, 8.>
 - 1. 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, 나이, 직업 및 주소. 이 경우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.
 - 2.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및 주소, 담당 직무 및 직위
 - 3.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
 - 4.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
 -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8, 9, 28.]

- 제29조의5(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)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(이하 "합격 취소등"이라 한다)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: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청
 - 2.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, 전직,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: 해당 승진, 전직,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청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9. 28.]

- 제29조의6(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)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심의·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합격취소등의 요청 내용 및 사유
 - 2. 소명 기한
 - 3. 소명 방법
 - 4.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
 - 5.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
 -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・의결할 수 있다.
 -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, 9, 28.]

- **제29조의7(인사감사 등)** ①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(이하 "인사감사"라 한다)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, 승진,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, 제23조, 제23조의2,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2조제3항, 제33조, 제36조제2항, 제38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감사원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중앙행정기관등의 장" 또는 "감사기구의 장"은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, "자체감사"는 "인사감사"로 본다.
 - ③ 주무기관의 장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 28.]

제30조(소수주주권의 행사 등) 법 제5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"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. [본조신설 2013, 8, 27.]

제31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기획재정부장관,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- 10 / 11 -

[본조신설 2014. 8. 6.]

부칙 <제33078호, 2022. 12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25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(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 확인 절차는 제외한다) 또는 제25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의 기준 에 관하여는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